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

2010. 8. 17



신규 방송사업 정책FT
[방송정책국]

목 차

I. 개 요	1
1.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의미	1
2. 추진 경과	5
II.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7
III. 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사항	8
1. 사업자 선정 방식	9
1-1. 종편PP 사업자 수	13
1-2. 보도PP 사업자 수	15
2. 종편PP 사업자 군 구분 여부	16
3. 보도PP 선정 시기	18
IV. 심사기준 구성 및 배점	19
1. 심사사항 구성	20
2. 심사사항별 배점	22
3. 심사사항별 주요 내용	26
V. 심사기준 관련 주요사항	32
1. 승인 최저점수 설정	33
2. 납입자본금	37
3. 출연금	41
4. 동일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46
5.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	49
VI. 향후 계획	52

I. 개요

1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의미

□ 기본 개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채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사업자 [방송법(이하 법) 제2조 제2·3호]
 - 채널의 프로그램 편성 주체인 동시에 SO·위성방송 등의 플랫폼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Program Provider, PP)로서 콘텐츠 시장의 수요자이자 공급자
- 종합편성 PP(이하 종편PP)는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 간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PP [법 제69조 제3항]
 -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80% 이상 편성해야 하는 등록PP와 달리, 다양한 분야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허용
 - ※ 방송 분야에 대한 규제는 오락프로그램 편성 규제(50%이하)만 적용[시행령 제50조 제1항]
 - ※ 등록PP는 등록된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80% 이상 편성하여야 하고, 보도프로그램은 편성 금지[시행령 제50조 제4·5항]
 -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편성전략이 가능하고, 콘텐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큼

- **보도전문 PP**(이하 보도PP)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 보도 프로그램을 80%이상 편성하는 PP [시행령 제50조 제2항]

□ **진입 제도**

- 종편·보도PP는 방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사업자 지위를 획득 [법 제9조 제5항]
- 종편·보도PP의 승인 여부는 방송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 [법 제10조 제1항]

<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1~7호 >

- 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③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④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⑤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⑦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방송법에서 규정한 등록요건 [법 제9조의2 제1항] 을 충족하면 사업자로서 자격을 갖는 등록PP와 달리,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심사과정 없이 승인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승인 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기준이 필요하고, 심사기준에는 방송법에서 규정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정책목표가 반영

□ **소유 제한**

- 종편·보도PP에 대해 1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와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제한 [법 제8조 제2·3항 및 제14조 제2항]

【종편·보도PP의 소유 제한】

구 분	1인 지분	일간신문·뉴스통신	대기업	외국인
종편PP	40%	30%	30%	20%
보도PP	40%	30%	30%	10%

※ 구독률 20% 이상 일간신문은 종편·보도PP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금지[법 제8조 제4항]

- 소유 제한에 따라, 승인 신청법인은 다양한 주주로 구성되고, 이러한 구성 주주에 대해 적법성(신청자격) 등을 심사

□ 편성 제도

- 종편PP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비해 완화된 국내제작·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규제가 적용 [법 제71·72조]

【종편·보도PP의 편성 제도】

구 분		지상파방송	종편PP	일반PP(보도PP 포함)
국내 제작	국내제작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중 80% 이상	40% 이상	40%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전체 애니메이션 중 45% 이상	35% 이상	35% 이상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전체 프로그램 중 1% 이상	-	-
외주 제작	외주제작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중 KBS1/2 : 24%/40% MBC,SBS : 35% 이상	-	-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주시청시간대 중 10% 이상	15% 이내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프로그램	전체 외주제작 중 21% 이내	-	-

* 구체적인 비율은 고시로 정함

※ 국내제작 영화(20% 이상)·대중음악(60% 이상) 및 1개 국가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60% 이내) 편성규제는 지상파와 모든PP가 동일

- 유연한 편성 규제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 편성·제작 가능

□ 의무송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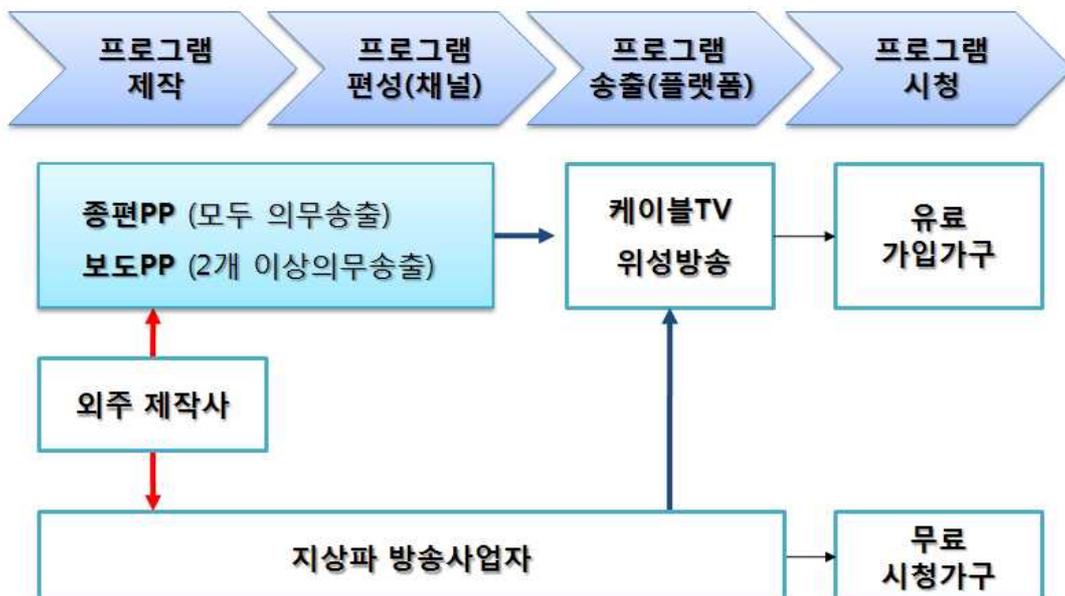
- SO·위성방송의 다양한 채널 구성 등을 위해 모든 종편PP와 2개 이상의 보도PP는 의무송출 대상에 포함 [시행령 제53조 제1항]

【SO·위성방송의 의무송출 제도】

지상파방송	종편PP	보도PP	등록PP
KBS1TV, EBS	모든 채널	2개 이상	공공3/공익3/종교3

- 모든 종편PP는 SO·위성방송의 의무송출 대상이므로, 방송망을 갖추지 않고도 전국 방송이 가능
- 보도PP는 2개 이상이 의무송출 대상이므로, 보도PP가 추가 도입되면 현실적으로 채널 확보를 위한 경쟁 불가피

【종편·보도PP의 방송시장에서의 의미】



2

추진 경과

- '08.12월, 방송사업 소유 제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법 개정안 국회 발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나경원, 허원제 의원 발의)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08.12월, 신규 종편 PP 도입 추진 발표('09년 방통위 업무보고)

◇ 신규 사업 도입을 통한 미디어 융합 촉진

- 시청자의 다양한 미디어 욕구를 충족하고 방송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규 종합편성 PP 도입 추진
- ※ 방송법 개정 등과 연계하여 도입시기 판단

- '09.7월, 방송법 개정

※ '09.3~6월 여·야 동수의 전문가 20인이 참여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운영

- '09.10월,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 관련 법에 대한 결정 선고

- '10.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 **방송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출 자료 및 공개 방법
- 일간신문의 구독률 산정 기준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추가직무, 구성 및 운영 등

- '10.3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 '10.5월, 종편·보도PP 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 발표
- '10.6월, 시청점유율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위원회 보고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는 고시 위임)
- 시청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 마련 등

- '10.7월, 일간신문 부수 인증기관 지정(ABC협회)

II.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정책 목표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추진 방향

- ▶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있는 사업자 선정
 - 정책목표를 고려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

- ▶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절차 추진
 - 폭넓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선정 과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

Ⅲ. 사업자 선정 관련 주요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할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제시
 -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
 -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정해진 사업자 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 방식

1-1. 종편PP 사업자 수 / 1-2. 보도PP 사업자 수

- 비교평가 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 종편·보도PP 사업자 수를 각각 두 가지 방안으로 구분

2. 종편PP 사업자 군 구분 여부

- 종편PP를 선정할 때, 사업자 군(언론사군/대기업군 등)을 구분할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제시

3. 보도PP 선정 시기

- 종편·보도PP를 동시 또는 순차 선정할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제시

1

사업자 선정 방식

◇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할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제시

【1안】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이하 '절대평가')

【2안】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정해진 사업자 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이하 '비교평가')

【1안】 절대평가 방식

□ 개 요

-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서 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

※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없는 경우, 승인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음

□ 기존 사례

- IPTV 제공사업 허가 및 IPTV 콘텐츠제공 사업(보도PP) 승인, 현행 기간통신사업 허가(주파수 제약이 없는 경우) 등

※ IPTV 콘텐츠제공 사업(종편PP)도 절대평가를 통해 승인하도록 고시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사례】

시기	허가승인 대상	사업자 수		탈락 이유
		신청	허가승인/탈락	
'08.9월	IPTV 제공사업 허가	4	3 / 1	재정적 능력 미달
'09.3월	IPTV 보도PP 승인	1	- / 1	모든 심사사항 점수 미달
'09.8월	기간통신사업 허가	4	2 / 2	재정적·기술적 능력 미달

□ **주요 논거**

- ①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결정
- ② 정부 개입의 최소화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정부는 방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고, 사업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력과 사업성을 확보
- ③ 시장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자 수를 제시하는 데 한계
 - 시장 확정 및 전망에는 관련 정책의 추진 여부 및 효과, 사업자 간 경쟁 상황 등 다양한 변수 존재
 - 종편·보도PP 사업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어, 적정 사업자 수 도출을 위한 시장 분석 등에 한계

[2안] 비교평가 방식

□ 개요

-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중 정해진 사업자 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존 사례

- 방송사업 허가·승인의 경우, 주파수 제약(위성방송, 지상파 DMB 등)이 있거나, 비교적 시장 확정 및 전망이 용이한 경우 (홈쇼핑PP) 주로 채택
-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경우, 주파수 제약(IMT-2000, WiBro 등)이 있는 경우 주로 채택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한 사례】

시기	허가승인 대상		사업자 수	사업자 수 결정 주요요인
'00	위성방송 허가		1개	위성 수 제약
'00	IMT-2000 허가		3개	주파수 제약
'01	홈쇼핑PP 승인		3개	시장 규모
'05	WiBro 허가		3개	주파수 제약
'05	위성DMB 허가		1개	위성 수 제약
'05	수도권 지상파 DMB 허가	지상파TV군	3개	주파수 제약
		비지상파TV군	3개	
'07	보도FM 허가		1개	주파수 제약

※ '00년 이후 방송·통신 심사 사례 위주로 분석

□ 주요 논거

- ① 정부가 정교한 시장분석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방송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적정 사업자 수를 제시하여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리스크 부담이 경감되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
- ② 정책목표 및 경제적·사회적·기술적 분석 등을 토대로 적정 사업자 수를 도출하여 선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 ③ 사업자 수를 제한하지 않아 다수의 사업자가 선정되는 경우, 방송시장의 사업성 악화,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 인건비 등 가격 상승 등으로 전체 방송시장 발전을 저해할 우려

1-1 종편PP 사업자 수

- ◇ 비교평가 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 종편PP 사업자 수를 두 가지 방안으로 구분

【1안】 2개 이하 사업자 선정

【2안】 3개 이상 다수 사업자 선정

※ 최근 개최된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2개 이하의 종편을 선정하자는 입장'과 '3개 이상의 종편을 선정하자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감안

【1안】 2개 이하 사업자 선정

- ①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수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규 사업자 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적절한 수준의 지원과 사업 역량을 집중하여 정책목표를 달성
- ②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안정적 지위 및 사업성 확보를 바탕으로 시장에 조기 안착하여, 방송시장 내 경쟁 구도 형성 가능
 - 다수의 사업자가 시장에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 시장 부담이 크고 사업자 간 경쟁 과열로 인한 부작용 우려
- ③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송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2안] 3개 이상 다수 사업자 선정

- ① 다수 사업자의 활발한 시장 경쟁을 통해 방송산업의 경쟁력 향상, 시청자 선택권 확대 등 정책목표를 달성

- ② 글로벌 시장, 국내 시장의 동태적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내 방송광고 시장 상황만을 염두에 두고 소수의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는 없음
 - 다양한 편성 형태, 부가 수익 등 효율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방식을 통해 경쟁력 및 사업성 확보 가능

- ③ 방송사업에 대한 수요를 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어, 공평한 방송사업 기회를 부여

※ 방송사업에 대한 수요와 정책목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3개, 4개, 5개 이상 등을 선정하는 방안 고려 가능

1-2 보도PP 사업자 수

◇ 비교평가 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 보도PP 사업자 수를 두 가지 방안으로 구분

【1안】 1개 사업자 선정

【2안】 2개 이상 다수 사업자 선정

※ 종편PP와 달리, 이미 시장에 2개의 보도PP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

【1안】 1개 사업자 선정

- ① 이미 시장에 2개의 보도PP가 존재하고 있고, 종편PP가 추가로 도입될 것이므로 충분한 수준의 시청자 선택권 확대 가능
- ② 현재 보도PP 의무송출 채널이 2개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채널 확보 경쟁 완화 가능

【2안】 2개 이상 다수 사업자 선정

- ① 다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방송시장 경쟁 활성화 및 시청자 선택권 확대 등 정책목표 달성에 유리
- ② 방송사업에 대한 수요를 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어, 공평한 방송사업 기회를 부여

※ 방송사업에 대한 수요와 정책목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2개, 3개, 4개 이상 등을 선정하는 방안 고려 가능

2 종편PP 사업자 군 구분 여부

◇ 종편PP를 선정할 때, 사업자 군을 구분하여 선정할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제시

【1안】 사업자 군을 구분하여 종편PP를 선정

【2안】 별도의 구분없이 종편PP를 선정

【1안】 사업자 군을 구분

□ 개요

- 사업자 군별로 마련된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
 -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는 비교평가 방식의 경우, 사업자 군별로 사업자 수를 결정
- 사업자 군은 언론사군, 대기업군, 기타기업군 등으로 구분 가능(예시)

□ 기존 사례

-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 허가의 경우, 지상파TV 및 비지상파TV 사업자 군을 구분하고 각 군별로 3개 사업자 선정

□ 주요 논거

- ①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
- ② 다른 특성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

[2안] 별도의 구분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 개 요

- 사업자 군 등 별도의 구분기준 없이 사업자를 선정

□ 기존 사례

- 위성방송·위성DMB 허가, 홈쇼핑PP 승인 등의 경우, 별도의 구분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 주요 논거

- 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업자 군 구분 등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② 경쟁이 치열한 사업자 군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간 균등한 사업 기회를 박탈
 - 특정 사업자 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사업 신청 단계가 아닌 심사단계에서 고려되는 것이 적절

3

보도PP 선정 시기

- ◇ 종편·보도PP를 동시 또는 순차 선정할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제시

【1안】 종편·보도PP를 동시에 선정

【2안】 종편PP 선정 이후 보도PP 선정

【1안】 종편·보도PP 동시 선정

- ① 신규 사업자에게 시장 확보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
- ② 한 차례로 사업자 선정이 끝나 행정적·사회적 부담이 적음

【2안】 종편PP 선정 이후 보도PP 선정

- ① 시장 상황을 고려한 사업 승인 정책 추진이 가능
- ② 사업자 입장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

IV. 심사기준 구성 및 배점

1. 심사사항 구성

- 방송법 제10조 제1항을 바탕으로 심사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을 구성

※ <심사기준 단계>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

2. 심사사항별 배점

- 정책목표와 종편·보도PP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심사사항의 배점 부여 방안을 제시

3. 심사사항별 주요 내용

- 심사사항의 하위 심사기준으로, 중분류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의 구성 및 주요내용을 제시

1

심사사항 구성

-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 제1항을 토대로 심사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을 구성

□ 개 요

- 종편·보도PP 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방송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함

<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1~7호 >

- 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③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④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⑤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⑦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따라서, 방송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심사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을 구성

※ <심사기준 단계>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

□ 기존 사례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시, 법 제10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된 6개 사항 중 '③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외한 5개 사항은 모두 심사사항으로 제시

○ ‘③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의 경우, 사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심사기준에 반영

- 위성방송, 위성DMB 등 특정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지 않는 경우, ‘지역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의 하위 심사항목으로 통합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의 경우,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사항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음

□ 심사사항 구성 방안

○ 중요한 심사 요소로 판단되어 방송법에 규정된 6개 사항은 심사기준 마련 시 충분히 반영할 필요

- 다만, 특정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업 허가·승인에 대한 이전 사례를 고려하여, ‘③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의 하위 심사항목으로 통합

☞ 심사기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은 총 5개로 구성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2

심사사항별 배점

- ◇ 정책목표와 종편·보도PP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심사사항에 대한 배점 부여 방안을 제시

□ 기존 사례

- 허가·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업 특성과 허가·승인 당시의 정책목표 등에 따라 배점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배점이 높았고,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배점이 낮았음

※ 그 동안 주로 플랫폼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였으므로, '기술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중시했던 것으로 판단

- IPTV 종편·보도PP 승인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배점이 높았음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배점이 낮지만 방송사업의 경우보다는 배점이 상향 조정

* IPTV 종편·보도PP 승인 심사기준은 '08년 방통위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 IPTV 종편·보도PP 승인절차는 방송법상 종편·보도PP 승인절차를 준용(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심사사항별 배점 사례(단위 : %)】

심사사항	위성 방송	지상파 DMB	위성 DMB	경인 민방	보도 FM	방송 평균	IPTV (종편보도)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0	25	20	32	30	25.4	24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15	20	20	22	20	19.4	2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5	15	20	20	15	19	20
재정 및 기술적 능력	30	30	30	20	30	28	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10	10	10	6	5	8.2	12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종편PP 배점 방안

- 역량있는 종편PP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
- 방송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하고 유료방송 및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종편PP의 콘텐츠 경쟁력, 자금 조달 등 경영계획이 중요하고, 방송발전 전반에 대한 지원계획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종편PP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방안이 중요

- 따라서, ①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②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배점 비중을 강화
- 또한, 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한 배점 비중도 기존 방송사업 허가·승인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

☞ 종편PP에 대한 심사사항별 배점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

【1안】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배점 방안

【2안】 정책목표 중 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한 배점 방안

【3안】 IPTV 종편PP 심사기준을 적용한 배점 방안

【종편PP 배점 방안(단위 : %)】

심사사항	【1안】	【2안】	【3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5	23	24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25	27	2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3	23	20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5	15	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12	12	12
합 계	100	100	100

□ 보도PP 배점 방안

- 역량있는 보도PP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
-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보도PP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과 함께, 안정적인 방송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계획도 중요
- 따라서, ①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배점 비중을 강화

☞ 보도PP에 대한 심사사항별 배점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

【1안】 정책목표를 고려한 배점 방안

【2안】 IPTV 보도PP 심사기준을 적용한 배점 방안

【보도PP 배점 방안(단위 : %)】

심사사항	【1안】	【2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30	24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20	2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5	20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5	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10	12
합 계	100	100

3

심사사항별 주요 내용

- ◇ 심사사항의 하위 심사기준으로, 중분류에 해당하는 심사 항목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을 제시

가.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심사항목 구성

- 사업계획이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청법인(컨소시엄)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심사
- ①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② 시청자 권익 실현 방안, ③ 신청법인의 적정성, ④ 지역 · 사회 · 문화적 기여도 등 4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의 경우,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②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③ 신청법인 및 구성주주의 건전성·적정성, ④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를 주된 심사항목으로 구성

□ 심사항목 주요내용

- ①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계획) 방송법 규정 [법 제5조 방송의 공적책임,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을 토대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방안 등을 평가
- 방송사업의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대표자·편성책임자·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의지, 재난 방송 편성계획, 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평가

②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방송법상 시청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규정의 이행 계획 등 시청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평가

- 자체심의기구 운영 [법 제86조] ,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87조]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법 제89조] 등을 평가
- 어린이·청소년 보호 방안, 노약자·장애인·국내 거주 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 등을 평가

③ (신청법인의 적정성) 신청법인·주주구성의 적정성과 신청법인·구성주주의 건전성 등을 평가

-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이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신청법인·주주구성의 적정성을 평가
- 신청법인 및 구성주주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납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신청법인·구성주주의 건전성을 평가

④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지역·사회·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실적 및 계획을 평가

- 공익사업, 지역·사회·문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역 관심사항 등 지역 밀착 프로그램 제작·편성·유통, 유·무형 문화의 보존·발전 등에 대한 실적 및 계획을 평가

나.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 심사항목 구성

-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편성·제작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우수성,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①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②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③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등 3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의 경우, ①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계획, ② 방송프로그램 제작·수급계획을 주된 심사항목으로 구성
- 플랫폼사업자인 위성방송·지상파DMB·위성DMB 허가 심사의 경우 채널 구성계획, 홈쇼핑PP·홈쇼핑DP(T-commerce) 승인의 경우 상품 구성계획을 포함

□ 심사항목 주요내용

- ①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독창성·우수성, 편성의 자율성 확보 방안 등을 평가
- ②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 및 경영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평가
- ③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국내·외 다양한 제작주체와의 협력계획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심사항목 구성

- 시장 분석 등을 토대로 한 사업추진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재무, 인력 운영 계획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경영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 ① 사업추진계획, ②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③ 납입자본금 규모, ④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⑤ 사업성 분석, ⑥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등 6개 심사항목으로 구성
-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의 경우, ① 채널운용 및 마케팅계획(사업추진 계획), ②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 ③ 자금 조달·운영계획, ④ 사업성 분석, ⑤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방안을 심사항목으로 구성

□ 심사항목 주요내용

- ① (사업추진계획) 시장 분석 및 경영전략, 국내·외 콘텐츠 유통, 해외 진출전략,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②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분야별·연도별 소요인력 산출 및 충원 계획, 우수 인력 확보 방안, 신규 인력 충원 및 교육 훈련 계획 등을 평가
- ③ (납입자본금 규모)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
- ④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차입 및 증자계획 등 자금 조달 계획과 시설투자, 경상운영비 등 자금 운영계획을 평가

- ⑤ (사업성 분석) 수익·비용분석의 타당성·구체성, 추정재무제표의 적정성, 전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등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 등을 평가
- ⑥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대표자·임원의 전문성 등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경영 감시기구 등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평가

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심사항목 구성

- 신청법인(컨소시엄)의 재무적 안정성 등 재정적 능력과 방송 운영의 기반이 되는 기술적 능력을 심사
- ① 재정적 능력, ② 자금출자 능력, ③ 기술적 능력 등 3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의 경우, ① 재정적 능력, ② 자금출자 능력(홈쇼핑PP 제외), ③ 기술적 능력(플랫폼사업자의 경우 세분화)을 심사항목으로 구성

□ 심사항목 주요내용

- ① (재정적 능력) 신청법인·구성주주의 총자산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매출액증가율 등의 재무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 재정적 능력을 평가
- ② (자금출자 능력) 지속적인 자금 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신청법인·구성주주의 신용등급 등 자금출자 능력을 평가

- ③ (기술적 능력) 방송 제작·송출을 위한 시설 설치·운용계획, 콘텐츠 제작·편집 기술 확보계획, 3D 등 첨단 방송 기술 활용 및 사업화 방안 등을 평가

마.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심사항목 구성

- 방송 사업 또는 방송관련 사업 등을 통한 방송발전 지원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 ① 방송발전 기여계획, ②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③ 출연금 등 3개 심사항목으로 구성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의 경우, ① 방송영상산업 지원계획, ② 방송발전 기여 의지(홈쇼핑PP는 유통산업 포함), ③ 방송발전기금 출연(홈쇼핑DP 제외), 및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을 주된 심사항목으로 구성

□ 심사항목 주요내용

- ① (방송발전 기여계획) 방송산업 관련 인력 양성,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등을 통한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등을 평가
- ②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합리적인 콘텐츠 거래 관행 정착 방안,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의 우수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③ (출연금)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

V. 심사기준 관련 주요사항

1. 승인 최저점수 설정

- 심사기준 단계에 따라 ① 전체 총점, ② 심사사항별(대분류) 총점, ③ 심사항목별(중분류) 총점 등 세 단계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

2. 납입자본금

- 종편·보도 PP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마련

3. 출연금

- 신규 승인을 받은 종편·보도PP가 납부하는 최소 출연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마련

4. 동일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 동일인이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중복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대해 검토

5.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

- 동일인이 복수의 승인 신청법인(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 검토

1

승인 최저점수 설정

- ◇ 심사기준 단계에 따라 ① 전체 총점, ② 심사사항별(대분류) 총점, ③ 심사항목별(중분류) 총점 등 세 단계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

※ <심사기준 단계>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

가. 전체 총점 및 심사사항별 승인 최저점수

□ 개요

- 전체 총점 및 심사사항별 총점이 승인 최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종편·보도PP 사업 심사에서 탈락

□ 기존 사례

- IPTV 종편·보도PP 승인 및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경우, 전체 총점 및 심사사항별 승인 최저점수를 모두 설정
- 위성DMB·지상파DMB·보도FM 허가 및 홈쇼핑DP(T-commerce) 승인의 경우, 전체 총점에 대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고 심사사항별 승인 최저점수는 설정하지 않음
- 위성방송 허가 및 홈쇼핑PP 승인의 경우, 전체 총점 및 심사사항별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지 않음

【전체 총점 및 심사사항별 승인 최저점수 사례】

구 분	전체 총점	심사사항별 총점
IPTV 종편·보도PP 승인	80% 이상	70% 이상
IPTV 제공사업 허가 기간통신사업 허가	70% 이상	60% 이상
위성DMB 허가 홈쇼핑DP 승인	70% 이상	-
지상파DMB 허가 보도FM 허가	65% 이상	-
위성방송 허가 홈쇼핑PP 승인	-	-

※ 일반적으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의 경우, 총점의 65% 이상(미만인 경우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심사사항별 40% 이상(미만인 경우 승인조건 부과 가능)으로 설정

□ 승인 최저점수 설정 방안

-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총점 및 심사사항별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할 필요
- 각 심사사항에 대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함으로써,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사항별 사업계획의 우수성을 담보

☞ 전체 총점의 80% 이상, 심사사항별 총점의 70% 이상을 승인 최저점수로 설정

※ 승인 심사시, 각 점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

80% 이상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20% 미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나. 심사항목별 총점

◇ 심사항목 단계에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1안】 심사항목별 총점이 승인 최저점수에 미달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에서 탈락

【2안】 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를 제시하지 않음

【1안】 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 제시

□ 개 요

- 심사항목별 총점이 승인 최저점수에 미달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에서 탈락
- 승인 최저점수는 전체 총점 및 심사사항별 승인 최저점수 보다 완화된 50% 이상으로 설정

※ '00년 이후의 방송사업 허가승인의 경우, 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를 적용한 사례는 없으나, 위성DMB 허가의 경우 '채널구성 계획의 우수성'이라는 특정 심사 항목에 대해 심사항목 총점(전체 중 8%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탈락하도록 함

□ 주요 논거

- ①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심사항목별 최저점수를 정함으로써, 각 심사항목에 대한 사업계획의 최소한의 수준을 담보

- ② 최저 승인점수를 전체 총점 및 심사사항별 승인 최저점수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과도하게 엄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안】 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를 제시하지 않음

□ 개 요

- 전체 총점 및 심사사항별 총점까지만 승인 최저점수를 제시하고, 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는 제시하지 않음

□ 주요 논거

- ① 심사사항별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엄격한 심사가 가능
 - 모든 신청법인이 모든 심사항목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음
- ② 특정 심사항목의 점수가 낮은 경우 승인조건 부과 등이 가능하므로, 심사항목별 승인 최저점수 설정은 지나치게 엄격

☞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별 총점이 해당 심사항목 총점의 50%에 미달하는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에서 탈락하는 **【1안】**으로 추진

2

납입자본금

- ◇ 종편·보도PP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제시

가.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 개 요

- 납입자본금은 초기 시설투자 및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 적정 수준의 납입자본금 규모는 신청법인의 사업 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어,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제시
- 시장 진입 초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을 확보할 필요
 - 따라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있는 종편·보도PP의 예상 연간 영업비용을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로 설정

□ 종편PP 영업비용

- 현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중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사업 초기 수준의 종편을 고려하는 경우, 연간 약 3,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초기 영업비용에 물가상승율을 감안

□ 보도PP 영업비용

- 기존 보도PP 수준을 고려하는 경우, 연간 약 400억원~8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규모로 종편PP는 3,000억원, 보도PP는 400억원을 제시

나. 납입자본금 규모 심사방안

◇ 납입자본금 규모에 대해 두 가지 심사방안을 제시

【1안】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 (계량 절대평가)

【2안】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계량 상대평가)

※ 최근 개최된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납입자본금 규모가 일정 금액을 충족하면 만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납입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감안

【1안】 계량 절대평가

□ 개 요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하고,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

□ 주요 논거

- ① 납입자본금 규모는 각 사업자의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과도한 수준의 자본금은 오히려 사업 운영에 부담이 되고, 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 시장에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음
- ② 최저 수준의 자본금 규모 충족 여부만을 평가함으로써 신청법인 간 자본금 확충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업자 부담 경감

[2안] 계량 상대평가

□ 개 요

-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심사항목 배점의 50%, 최고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배점의 100%를 부여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과 최고 금액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 순으로 50%~100% 사이의 점수를 균등 배분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0점 처리

【납입자본금 규모에 대한 계량 상대평가 방안】

평가 점수	심사항목 배점의 100% 부여	50% 초과 ~ 100% 미만 부여	50% 부여	0점 처리
납입자본금 규모	최고 금액	금액 순으로 균등 배분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미달

※ 예를 들어, 종편PP 신청법인이 제시한 최고 납입자본금이 5,000억원이고, 정부가 제시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이 3,000억원인 경우, 4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배점의 1% 가산

□ 주요 논거

- ①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 규모에 따라 평가 점수를 차등함으로써 심사의 변별력 확보 가능
- ② 납입자본금 규모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 등을 병행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자본금 확충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 가능

☞ **(절대평가)**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하는 **【1안】** 계량 절대평가로 추진

(비교평가) 신청법인 간 순위 산정을 위한 변별력이 중요하므로,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2안】** 계량 상대평가로 추진

- ◇ 신규 승인을 받은 종편·보도PP가 납부하는 최소 출연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제시

※ '00년 이후 홈쇼핑DP('05년)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의 경우, 출연금 납부를 심사기준에 포함

가. 최소 출연금 규모

- ◇ 신규 승인을 받은 종편·보도PP가 납부하는 최소 출연금 규모를 설정

【1안】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 신청법인의 최소 출연금 규모로 설정

【2안】 특정 금액을 지정하여 최소 출연금 규모로 설정

【1안】 납입자본금의 일정 비율

□ 개 요

-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 신청법인의 최소 출연금 규모로 설정

※ 신규로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로부터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0.3.11)

□ 기존 사례

- 위성DMB(10%, 137억원 납부), 경인방송(5%, 70억원 납부) 허가의 경우, 납입자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최소 규모 설정

□ 주요 논거

- 각 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한 출연금 부과가 가능하고, 출연금 규모를 산출하는 근거가 명확

[2안] 특정 금액을 지정

□ 개요

- 특정 금액을 지정하여 최소 출연금 규모로 설정

□ 기존 사례

- 위성방송(300억원) · 지상파DMB(10억원) · 보도FM(5억원) 허가 및 홈쇼핑PP(50억원) 승인의 경우, 특정 금액을 지정

□ 주요 논거

- 모든 신청법인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최소 출연금 규모가 설정되므로 형평성 제고

☞ 형평성 제고를 위해 특정 금액을 지정하되, 산출 근거가 자의적이지 않도록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최소 출연금 기준 규모로 설정

※ 구체적인 비율은 논의를 통해 10% 이내에서 결정

나. 출연금 규모 심사방안

◇ 출연금 규모에 대해 두 가지 심사방안을 제시

【1안】 최소 출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 (계량 절대평가)

【2안】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출연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계량 상대평가)

【1안】 계량 절대평가

□ 개 요

- 최소 출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

□ 기존 사례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 심사의 경우, 최소 출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하는 계량 절대평가 실시

※ 다만, 경인방송 및 보도FM 허가 심사의 경우, 최소 출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배점의 100%를 부여하는 것은 동일했으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하지 않고 감점 처리

□ 주요 논거

- ① 최저 수준의 출연금 규모 충족 여부만을 평가함으로써 신청법인 간 출연금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업자 부담 경감
- ②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심사의 객관성·명확성 제고

[2안] 계량 상대평가

□ 개 요

-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출연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
 - 최소 출연금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심사항목 배점의 50%, 최고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배점의 100%를 부여
 - 최소 출연금 기준과 최고 금액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 순으로 50%~100% 사이의 점수를 균등 배분
 - 최소 출연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0점 처리

【출연금 규모에 대한 계량 상대평가 방안】

평가 점수	심사항목 배점의 100% 부여	50% 초과 ~ 100% 미만 부여	50% 부여	0점 처리
출연금 규모	최고 금액	금액 순으로 균등 배분	최소 출연금 기준	최소 출연금 기준 미달

□ 주요 논거

- ①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출연금 규모에 따라 평가 점수를 차등함으로써 심사의 변별력 확보 가능
- ② 방송 발전에 대한 기여가 큰 사업자에게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 **(절대평가)** 최소 출연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심사 항목 배점의 100%를 부여,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처리하는 **【1안】** 계량 절대평가로 추진

(비교평가) 신청법인 간 순위 산정을 위한 변별력이 중요하므로,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출연금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2안】** 계량 상대평가로 추진

4

동일인의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 ◇ 동일인*이 종편·보도PP로 선정되어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중복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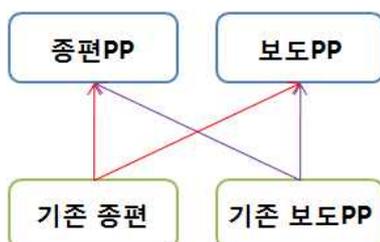
※ 동일인 : 계열회사, 30% 이상 출자한 자 등 방송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

가. 기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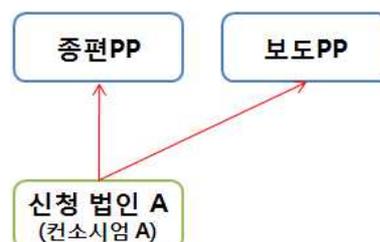
□ 개 요

- 동일인이 종편·보도PP로 선정되어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중복하여 소유하게 되는 상황
 - 구체적으로 ① 현재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종합편성 TV방송사업자 또는 보도PP가 신규 종편·보도PP 승인을 신청하여 소유하는 경우(기존 사업자의 승인 신청)와,
 - ② 동일한 신규 신청법인(컨소시엄)이 복수의 종편·보도PP에 승인을 신청하여 소유하는 경우(신규 사업자의 복수 신청)로 구분

【 ① 기존 사업자의 승인 신청 】



【 ② 신규 사업자의 복수 신청 】



□ 검토 의견

- 동일인이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2개 이상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의 다양성 등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 보도프로그램 편성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 방송 사업자 또는 보도PP에 대해서만 허용 [시행령 제50조 제5항]
- 따라서, 동일인이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중복하여 소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반영

나. 심사 방안

① 기존 사업자가 승인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단계) 승인 신청시, 기존에 운영하던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채널에 대한 '처분계획(양도·폐업 등)'을 제출
 - (심사 단계) 심사위원회가 청문 등을 병행하여 신청법인이 제출한 처분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
 - 기존에 운영하던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채널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심사항목은 과락 처리
- ※ 방송의 다양성의 실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의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에서 평가

- (승인 단계) 해당 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기존 방송 사업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 교부

2 신규 사업자가 복수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단계)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승인 신청 철회계획'을 제출
- (심사 단계) 심사위원회가 청문 등을 병행하여 신청법인이 제출한 철회계획을 심사
 - 승인 신청에 대한 철회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심사항목은 과락 처리
- ※ 방송의 다양성의 실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의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에서 평가
- (승인 단계) 해당 법인이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한 개에 대한 승인 신청이 철회된 후 승인장 교부

5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

◇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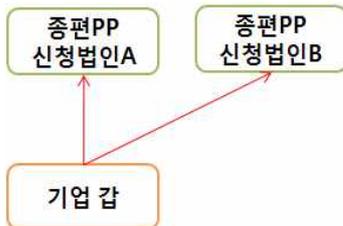
※ 동일인 : 계열회사, 30% 이상 출자한 자 등 방송법상 특수관계자를 포함

【1안】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 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 또는 감점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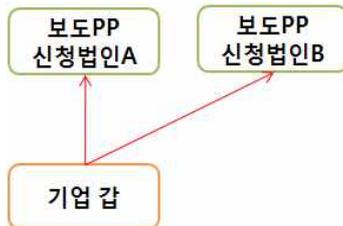
【2안】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허용

※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① 다수의 종편PP 신청법인, ② 다수의 보도PP 신청법인, ③ 종편·보도PP 신청법인에 구성 주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 등

【①종편PP 중복 참여】



【②보도PP 중복 참여】



【③종편·보도PP 중복 참여】



【1안】 중복 참여 금지 또는 감점 처리

□ 개요

-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 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 또는 감점 처리

□ 기존 사례

- 홈쇼핑PP 및 홈쇼핑DP(T-commerce) 승인의 경우, 복수의 신청법인에 속한 주요 주주가 있는 경우, 감점 처리
-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 허가의 경우, 사업자 군을 구분(지상파/비지상파TV군)하여, 어느 한 사업자군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 참여한 자는 다른 사업자군 신청법인에 참여 금지
 - 지역 지상파DMB 사업 허가의 경우, 방송권역별로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 참여한 자는 다른 신청법인에 참여 금지
 - 경인민방 사업 허가의 경우,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 참여한 자는 다른 신청법인에 참여 금지

※ IMT-2000 사업 허가시에도 특정 법인이 복수의 허가 신청법인 참여 금지

□ 주요 논거

- ① 신청법인 간 차별성을 강화하여 방송의 다양성 제고
- ② 다양한 주체의 방송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

[2안] 중복 참여 허용

□ 개 요

-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허용

□ 기존 사례

- '00년 이후 방송사업 허가·승인 중 위성방송·위성DMB·보도FM 허가 심사의 경우, 중복 참여를 제한없이 허용

□ 주요 논거

- ① 신청법인이 사업자 선정 이후 상장될 경우 주식의 매매에 대한 제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의 실익이 없음
- ② 현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 지분 제한을 신규 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법적 근거 없이 종편·보도PP 사업 참여에 대한 결격 사유를 제시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 발생 우려

☞ 심사의 합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동일인이 복수의 신청 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되, 방송의 다양성 제고 등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시

- **【1안】** 으로 결정하는 경우,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 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을 감점 처리하는 방안으로 추진

※ 구체적인 비율은 논의를 통해 5% 이내에서 결정

- **【2안】** 으로 결정하는 경우, 신청법인 간 주주구성의 차별성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안으로 추진

VI. 향후 계획

가.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 의결

- 의견수렴 : 공청회 개최(9월초) 등 온·오프라인 병행
- 의결 일시 : 9월 중순

나.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의결

- 보고 일시 : 「기본계획」 의결 이후(9월 중)
- 주요 내용 : 「기본계획」에 따른 심사항목 배점, 세부 심사항목 구성 및 배점, 평가방법, 승인 신청 요령 등
- 의결 일시 : 10월중

다. 신청 공고 및 설명회 개최

- 공고 기간 : 10월 ~ 11월 중
 - ※ 공고 기간은 1개월 이내로 고려
- 설명회 일시 :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의결 직후
 - 주요 내용 : 「기본계획」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 응답 등

라. 시청자 의견 수렴

- 제출 기간 : 11월 ~ 12월 중(신청서 접수 이후)
-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판

※ < 방송법 제10조 제2항 > 방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함

마.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 의결

- 의결 일시 : 11월 ~ 12월 중
- 주요 내용
 - 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승인 결격사유 심사 및 사업계획서 심사 실무에 관한 사항 등

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건」 의결

- 의결 일시 : 심사위원회 운영 종료 직후

※ '승인 심사위원회'는 12월 중 구성·운영

- 주요 내용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대상
 - 승인조건 부과 및 승인장 교부 계획 등

※ 세부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